



의안번호	제103호
------	-------

<p><b>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8. 19.

# 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8. 19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설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출렁다리 정기 휴무일 변경

나. 시설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탐정호 출렁다리 시설 입장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7. 18. ~ 2022. 8. 7. (20일간)

나) 결과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관광진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**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논산시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수요일”을 “월요일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활동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
4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)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미래사업과장	박 찬 택
	탐정호관리팀장	박 지 원
	담 당 자	김 주 영 (746-6478)

[별표]

탐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기준(제5조 관련)

(1인기준 /단위: 원)

구 분	일 반	어린이·청소년	유 아
개 인	3,000	2,000	면제
<p>※ 유료 입장객 일반 개인은 입장료 3,000원에 대하여 2,000원을, 어린이·청소년은 입장료 2,000원에 대하여 1,000원을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한다.</p>			
<p>《구분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 아: 만 7세 미만</li> <li>- 어린이·청소년: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</li> <li>- 일 반: 만 19세 이상</li> </ul> <p>《요금 관련》</p> <p>면제(정상요금의 100% 면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산시민(논산시 명예시민 포함)</li> <li>- 만 7세 미만 유아</li> <li>-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와 그 배우자 및 유족</li> <li>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)</li> <li>- 선(先)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 (당일 시 관내 해당 입장료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금액에 상응하는 인원에 한해 입장료 무료)</li> <li>- 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</li> <li>-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 <p>※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</p>			



<신 설>

4. ~ 6. (생 략)

[별표]

구 분	일 반	어린이·청소년	유 아
개 인	3,000	2,000	면제
<p>※ 유료 입장객 일반 개인은 입장료 3,000원에 대하여 2,000원을, 어린이·청소년은 입장료 2,000원에 대하여 1,000원을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한다.</p>			
<p>《구분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 아: 만 7세 미만</li> <li>- 어린이·청소년: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</li> <li>- 일 반: 만 19세 이상</li> </ul> <p>《요금 관련》</p> <p>면제(정상요금의 100% 면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산시민(논산시 명예시민 포함)</li> <li>- 만 7세 미만 유아</li> <li>- 국가유공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li> <li>- 선(先)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 (당일 시 관내 해당 입장료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금액에 상응하는 인원에 한해 입장료 무료)</li> <li>- 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</li> <li>-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 <p>※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</p>			

사람 1명 포함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
4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)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

[별표]

구 분	일 반	어린이·청소년	유 아
개 인	3,000	2,000	면제
<p>※ 유료 입장객 일반 개인은 입장료 3,000원에 대하여 2,000원을, 어린이·청소년은 입장료 2,000원에 대하여 1,000원을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한다.</p>			
<p>《구분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 아: 만 7세 미만</li> <li>- 어린이·청소년: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</li> <li>- 일 반: 만 19세 이상</li> </ul> <p>《요금 관련》</p> <p>면제(정상요금의 100% 면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산시민(논산시 명예시민 포함)</li> <li>- 만 7세 미만 유아</li> <li>-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와 그 배우자 및 유족</li> <li>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)</li> <li>- 선(先)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 (당일 시 관내 해당 입장료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금액에 상응하는 인원에 한해 입장료 무료)</li> <li>- 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</li> <li>-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 <p>※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</p>			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해 당 없 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해 당 없 음

나. 추계결과

○해 당 없 음

3. 작성자

미래사업과장 박 찬 택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